

달성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

의안 번호	1603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8. 10. 4.

제출자 : 달성군수

1. 제안이유

달성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내용을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계획하고 확정된 내용을 달성군의회에 보고함으로써 향후 계획의 내용과 예산 편성의 연계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근거법령

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의2

3. 주요내용

가.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결과 진단

나. 지역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

- 달성군 주민욕구 조사 결과

- 복지 공급 및 지역자원조사 현황

다.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

라. 세부사업 추진방안

마. 사회보장분야 재정 및 행정 계획

바.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

□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」

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(이하 "지역사회보장계획"이라 한다)을 4년마다 수립하고,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[사회보장기본법](#)」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 [개정 2017.3.21] [[시행일 2017.9.22]]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시(「[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](#)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지역사회보장계획(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,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·군·구의 회의 보고(보고의 경우 「[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](#)」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)를 거쳐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개정 2017.3.21] [[시행일 2017.9.22]]

③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)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·군·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[개정 2017.3.21] [[시행일 2017.9.22]]

④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[신설 2017.3.21] [[시행일 2017.9.22]]

⑤ 시·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40조에 따른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[신설 2017.3.21] [[시행일 2017.9.22]]

⑥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[개정 2017.3.21] [[시행일 2017.9.22]]

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(이하 "지역사회보장조사"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. [개정 2017.3.21] [[시행일 2017.9.22]]

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[개정 2017.3.21] [[시행일 2017.9.22]]

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개정 2017.3.21] [[시행일 2017.9.22]]